

정보공개제도의 도입과 운영절차



신각철(법제처 법제연구관)

1.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민주화·정보화사회에서 국민에 대한 알권리의 보장은 헌법상 추상권리로서 논의 되었으

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명백한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헌법상의 근거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제10조), 「언론·출판등 표현의 자유」(제

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제도화」가 구체적, 실질적으로 실현되어야 가능하다.

나.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복잡한 행정절차와 처리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숨겨진 밀실행정을 없애므로써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견제 등을 통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다. 주민의 행정참가 촉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복지, 보건, 환경위생, 교육, 문화 등 각종의 정보는 국민 각 개인에게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할 뿐만아니라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게 한다.

2 주요 외국의 입법례 검토

가. 미국의 정보공개법

1966년 제정된 미국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국민의 「알권리」를 기초로 정보의 공개원칙을 법률로

써 명백하게 밝혔다.

둘째는 평등원칙에 의하여 누구든지 이유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행정정보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셋째 부당하게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에는 국민은 법원에 의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기타 주요국가 입법례

영국은 1984년 데이터보호법과 1985년 지방자치 정보악세스법을 제정하였고, 독일은 1977년에 연방데이터보호법을, 캐나다는 1982년에 정보공개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밖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아직까지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행정정보의 공개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3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1994. 3. 2.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가. 정보공개제도 도입의 목적

(1)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2) 행정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부기반을 구축하여 시행여건을 사전에 조성한다.

(3)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한다.

나. 공개대상기관 및 정보

(1) 적용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대상이며, 입법, 사법부에서도 별도지침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 공개대상정보

지침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되, 문서외에 도면, 필름, 디스크 등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컴퓨터 처리정보(디스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 행정정보공개 시행기관의 구축

(1) 행정정보의 체계적 분류

「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16호, 1992. 12. 31)에 따른 보존기간별 분류 및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

390호, 1991.6.19)에 따른 자료분류 기준이 있다.

(2) 생산·수집 정보의 등록관리

①정부간행물 발간 등록대상

②행정자료 관리대상

③데이터베이스 자료관리대상

④마이크로 필름 문서 기록대상

(3) 정보색인·검색체제 구축

정보공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보목록을 전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존장소·시설·인력확보

문서보존실을 각 기관별로 설치하고 보존실에 열람·복사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소속직원중에 사서자격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문서 관리에 일관성,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명시하였다.

(5) 행정정보 유통체제 정비

행정정보의 유통확대를 위한 보급망 확충의 방법으로 당해 기관내에 행정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정부간행물, 행정간행물의 판매·보급을 확대하도록 제도화하였다.

(6) 공무원 지도·교육의 강화

업무처리절차 및 정보의 내용 파악등 운용측면에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 행정정보 공개업무처리 기준

(1) 정보공개청구서의 신청·접수
행정정보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자는 당해 기관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총무과 또는 문서과)에 신청하고, 소정 서식이 아닌 편지형식의 우편이나 전화등에 의한 청구도 가능하다.

(2) 공개·비공개여부의 심사

공개·비공개여부는 처리과장의 판단으로 결정하되,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기관내에 설치된 「행정정보공개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3) 공개제외 대상정보

①보안업무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공개외의 경우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를 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범죄의 예방·수사·소추·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④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생명·신체·자유·건강 등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⑤법인이나 사업자 등의 영업 또는 과학기술이나 금융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사업운

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⑥비공개를 전제로 제3자로 부터 취득한 정보

⑦행정기관에서 내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⑧행정기관에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공개할 경우 의사결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⑨기타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주는 정보 또는 행정의 공정·원활한 집행이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정보

(4)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및 처리기한

공개·비공개의 결정은 최소한 당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5) 정보의 공개일시·장소·방법

공개장소는 당해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방법은 당해 정보의 원본을 열람·복사 형태로 한다.

(6) 시행일자

92년이후 생산·수집된 정보는 94년 7월1일부터 공개하며, 91년 이전에 생산·수집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의 작성이 완성될 때 공개한다.

DB